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20. 2. 20(목) 총 10매(본문4)	
담당 부서	도시활력 지원과	담당자	• 과장 김남균, 사무관 윤동영 • ☎ (044) 201-3722
보도일시		2020년 2월 2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20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내 땅 개발행위허가,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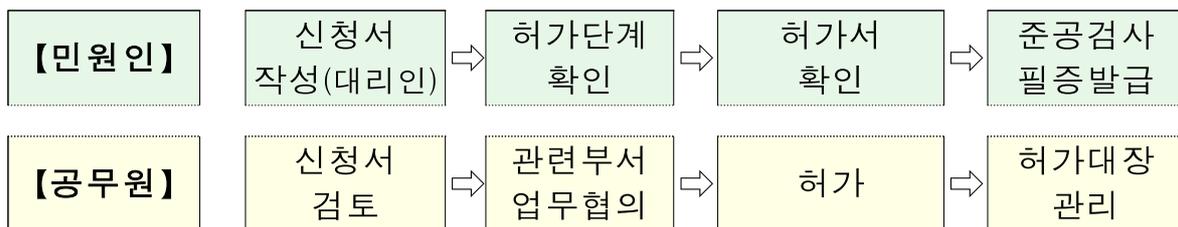
-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(<http://www.upis.go.kr/iuweb>)에서 간편하게
-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...준공검사필증도 발급 가능

□ 그동안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*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(<http://www.upis.go.kr/iuweb>)으로 신청하여 처리 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.

* 건축물의 건축, 토지형질변경(절토, 성토, 포장 등)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 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월 24일부터 통합 인허가지원시스템(<http://www.upis.go.kr/iuweb>)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【통합인허가시스템 처리절차】



① 주요 서비스 내용

□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.

①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

-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(위임장 첨부)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.
- 민원인(대리인 포함)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(허가서)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

②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를

-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(온나라)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.

【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】



② 신청방법 및 신청 가능지역

-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(개발 행위허가)에 접속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, 대리인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작성,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.(붙임 신청방법 참조)
-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.
-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,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 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.

<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가능지역('20년 2월 기준)>

시·도	시군구 수	시·도	인터넷 신청 가능 지자체
부산	16	충북	11
대구	8	충남	15
인천	10	전북	14
광주	5	전남	22
대전	5	경북	22
울산	5	경남	18
경기	31	제주	2
강원	18	세종	1

③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
-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하였다.

- 10개 지자체 시범운영(2.3~2.7)을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2월 24일 전국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.
- 아울러, 지자체 담당자 및 민원인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하여 콜센터(031-426-9973~5)를 운영할 계획이다.
-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,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오는 5월 「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뿐 아니라 건축허가,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운동영 사무관(☎044-201-37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개요**

- (목적)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*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

【개발행위의 종류】



- 연혁
 - 2000년 : 도시지역 대상으로 처음 도입
 - 2002년 : 국토계획법 제정 시 전 국토로 확대

□ **개발행위허가 대상**

- ① 건축물의 건축 :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
- ② 공작물의 설치 :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(옹벽, 굴뚝, 광고탑 등)
- ③ 토지의 형질변경 : 절토·성토·정지·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
- ④ 토석채취 : 흙·모래·자갈·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
- ⑤ 토지분할
 - * 녹지·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·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
 - * 「건축법」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등
-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: 녹지·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

참고 2

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(대리인)

①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(개발행위허가) 접속



② 대리인 지정 → 신청서 작성(대리인) → 첨부서류 등록(대리인)

대리인 지정 - 민원인

대리인추가

대리인추가 개발행위허가 대리인을 추가합니다.

상호 대표자명

업종 검색

번호	상호	업종	대표자명	전화번호
1	(주)에이포디	공공숙달	김OO1	031-988-6005

저장 닫기

신청서 작성 방법

1. 신청인 정보 입력(대리인)

2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- 행위구분, 신청위치, 신청내용

행위구분

신청위치

신청내용

저장 닫기

3. 첨부서류 등록

③ 수수료 납부 및 민원신청 → 처리결과 조회

4. 의제협의 파일 등록 - 수수료 계산

4. 수수료 전자결제 및 민원신청

처리결과 조회

번호	신청번호	신청일	처리	처리일자	결정	결정일자	신청사	의정결과
1	20220128010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의정결과	결의
2	20220128011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의정결과	결의
3	20220128012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의정결과	결의
4	20220128013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의정결과	결의
5	20220128014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의정결과	결의
6	20220128015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의정결과	결의
7	20220128016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의정결과	결의
8	20220128017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의정결과	결의
9	20220128018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의정결과	결의
10	20220128019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결의	2022-01-28	의정결과	결의

참고 3

개발행위허가 신청서

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9. 8. 7.>

개발행위 허가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[] 공작물설치 [] 토지형질변경 [] 토석채취 [] 토지분할 [] 물건적치			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)
	주소 (우편번호 :) (전화번호 :)		
	창업자 해당 여부: [] 해당 [] 미해당 ※ 신청인은 뒷쪽의 '창업자 안내' 를 확인하고, 창업자 해당 여부에 √ 표를 합니다.		

허가신청 사항

위치(지번)		지목		
용도지역		용도지구		
신청 내용	공작물 설치	신청면적	중량	
		공작물구조	부피	
	토지형질 변경	토지현황	경사도	토질
			토석매장량	
		입목식재 현황	주요수종	
			입목지	무입목지
	신청면적			
	입목벌채	수종	나무 수	그루
	토석채취	신청면적	부피	
	토지분할	종전면적	분할면적	
물건적치	중량	부피		
	품명	평균적치량		
	적치기간	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(개월간)		

개발행위목적

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, 준공 년 월 일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□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

○ (필요성·목적) 건축, 개발행위, 공장설립 등의 토지이용 인·허가 민원접수,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

※ 근거법령 :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제16조('16.1월 시행)

○ (추진경과) '14년 ISP 수립, '15~'16년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개발, '17~'18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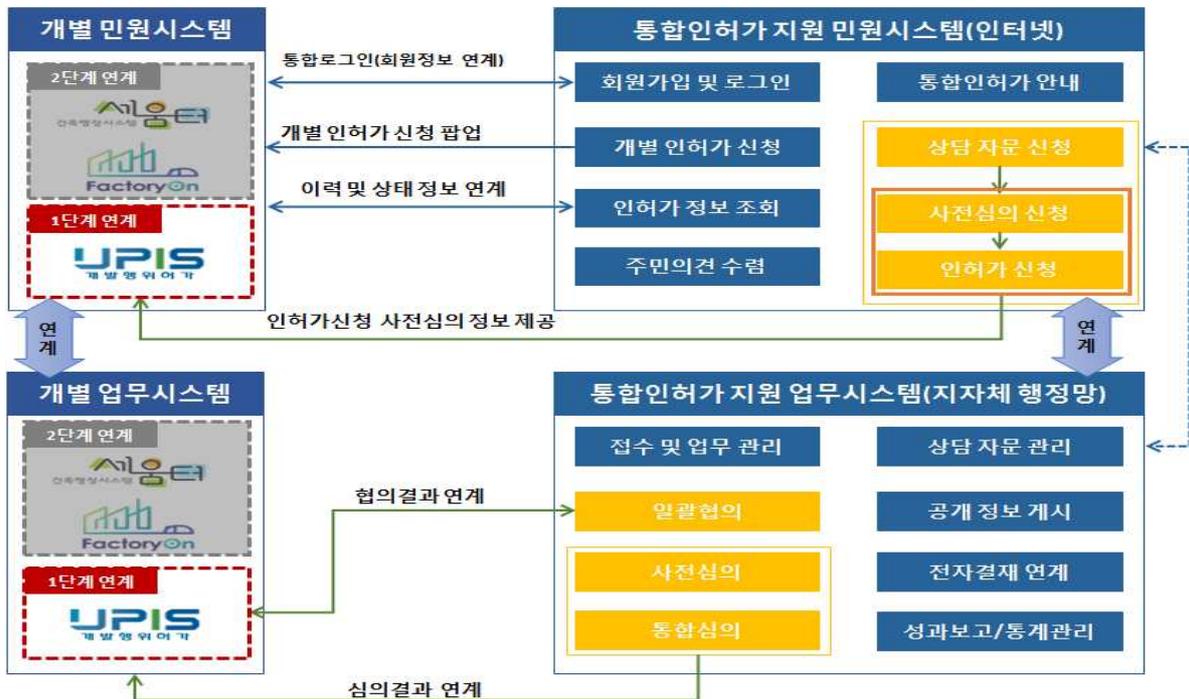
□ 주요내용 및 체계

○ 토지이용 통합인허가* 온라인 신청, 사전심의 신청, 상담·자문 지원, 인허가 진행상황 알림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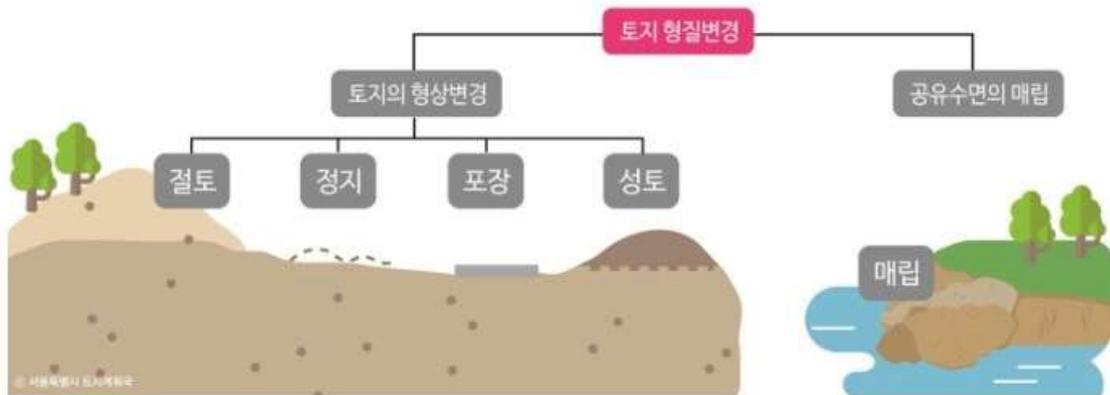
* 개발행위허가, 건축허가, 공장설립등의 승인

○ 통합인허가지원 업무시스템 개발 및 지자체 확산 : 개별 시스템*을 연계한 인허가 업무관리, 사전/통합 심의관리(전자심의) 등

* 도시계획정보체계(UPIS), 세움터(EAIS),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(FEMIS)



- 토지형질변경 :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서 절토·성토·정지·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



- ① 절토(切土) :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 내는 것
- ② 성토(盛土) : 땅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흙을 돋우어 쌓는 것
- ③ 정지 : 땅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다지는 것
- ④ 포장 : 땅의 표면을 시멘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씌우는 것